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환경산업관련법제의 개선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오 준 근*

차 례

- I. 문제의 제기
- II. 기후변화협약이 요구하는 각국의 환경산업 관련 입법적 과제
- III. 미국과 EU의 법·정책적 대응 사례
- IV. 우리나라의 입법적 대응 사례
- V.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사례의 입법적 쟁점과 법제개선의 과제
- VI. 요약 및 결론

I. 문제의 제기

1.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목적

2008년 10월에 찾아온 무더위를 놓고 TV, 라디오, 신문 등 각종 보도에 연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후변화”가 회자되고 있다.¹⁾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 1) 기후변화 홍보포털 http://www.gihoo.or.kr/portal/01_General_Info/01_Change.jsp 에 따를 경우 온실효과로 인하여 지구온난화의 지표인 지구표면온도는 지구표면 온도는 지난 100년동안(1906~2005) 0.74±0.18℃ 상승하였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기온 상승은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북반구 고위도로 갈수록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해양보다 육지가 더 빠른 온도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고 기록한다.(IPCC,2007) 이와 같은 지구온도 상승유형은 관측결과 지난 1,000년간 유례가 없는 높은 상승으로 나타났고, 지난 20년간은

법학자에게는 “기후변화”는 단순히 느낄 수 있는 현상 이상의 의미가 있다. 기후변화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법률용어 중의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기상법에는 “기후변화”라 함은 “인간 활동이 원인이 되거나 자연적인 요인에 따라 대기의 평균상태를 벗어나는 변화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²⁾

법률용어가 된 기후변화는 우리나라뿐이 아니다. “기후변화”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1992년에 체결되어 192개 국가가 비준한 UN기후변화협약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UN기후변화협약은 “인간 활동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야기된 지구대기 구성의 변화로 인하여 나타난 것으로서 비교 가능한 기간에 관측된 자연적인 기후의 다양성을 넘어서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기후의 변화”를 그 대상으로 한다.

이 협약은 범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의미의 기후 변화와 그 부정적 효과가 인류 공통의 우려로 작용하고 있음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였음에서 비롯되었다. 이와 같은 인식의 공유는 전 세계가 함께 대처하여야 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 “국제법”의 일부가 되었다.

UN협약을 준수하여 “기후변화”,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촌 대한 부정적 효과를 막기 위하여 각국은 입법적, 재정적, 정책적으로 다양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는 특히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활동 (이하 “환경산업”이라 총칭한다)에 대하여 직접·간접적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먼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물질의 생산과 배출과 관련된 산업활동을 하는 자는 기후변화 물질의 “저감”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이산화탄소 등 기후변화 물질 배출을 규제하는 한편, 풍력에너지와 같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대체하는 시설 관련 산업, 그린 빌딩과 같이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저감하는 시설 관련 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에 나서게 된다.

다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활동에 대한

20세기 동안 가장 더웠던 시기로 나타났으며 지난 100년간 가장 더웠던 12개의 해는 모두 1983년 이후에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2) 현재 입법이 추진 중인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은 보다 구체적인 용어의 정의를 시도하고 있다. 즉 “기후변화라 함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지구 대기 조성이 변화됨으로써 상당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 <http://www.tfcc.go.kr/> 정보마당의 입법예고 자료 참조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기상산업을 그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각 국가 입장에 볼 때, UN의 각종 협약은 다른 한편 기후변화를 막고, 특히 지구 대기에 야기된 공기 요소의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의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UN 협약은 국제법의 일부이므로 우리나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지구촌의 기후변화를 막는 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UN이 제공한 신산업영역에서 대한민국의 역량을 증강하려면 국가차원의 전략 및 프로그램의 수립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위와 같은 필요성에 기초하여 기존의 환경산업과 관련된 각종 법제를 기후변화협약과 관련지어 검토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입법론적으로 정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및 그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기후변화협약과 관련된 환경산업관련법제”이다.

“환경산업”은 학문적 영역 및 시각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그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환경산업이다. 즉 “기후변화협약의 실천을 위하여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물질을 저감하거나, 기후변화에 적응함과 관련된 산업”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환경산업관련법제의 개선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을 하는 것이다.

이 작업을 하려면 먼저 UN의 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환경산업과 관련된 규범적 내용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UN협약에 대하여는 국내외적으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이 이루어져 있고, 또 그 후속논의가 진행중이다.³⁾ 본 연구에서는 국내적 입법

3) 기후변화협약을 고찰한 국내의 문헌으로는 김현준, 기후보호의 법적 과제 - 주요외국의 법제 현황 및 우리의 입법방향, 한양법학 제23집 (2008. 6.), 47쪽 이하; 윤순진, 기후변화와 한국 사회의 대응: 교토의정서 발효에 즈음하여, 환경과 생명 제43집 (2005), 151쪽; 이재협, 교토의정서상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의 법적 문제, 환경법연구 제29권 제1호(2007), 319쪽; 이재협, 교토의정서상 의무준수체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통상법률 제39권 (2001), 102쪽; 한승호, 기후변화협약의 새로운 도전: 청정개발체제의 이해와 활용, 한울 아카데미 2006 등 참조

의 필요성을 논의함에 대한 전제로서 기후변화협약의 내용 중 환경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항의 규범적 내용만을 정리하였다.

입법론적 고찰을 위한 논리 전개에 도움을 얻기 위하여 미국과 EU의 환경산업에 대한 입법적 대응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환경법과 관련한 각종 교과서, 국내외에 발표된 각종 논문과 인터넷의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 후 그 내용에 포함된 사항을 입법론과 관련하여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위와 같은 분석의 틀 위에서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는 국내의 법률을 수집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환경법제의 개선에 관한 논의를 함에 있어 행정법학적 측면에서는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의 각 측면에서 매우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다. 기후변화협약의 실천을 위한 조직적 대응과 관련한 행정조직의 정비,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각종 산업에 대한 규제수단의 점검, 기후변화로 야기된 환경피해와 관련한 국가배상과 행정소송 등 매우 다양한 측면이 그것이다.⁴⁾ 본 연구는 이들 중 “기후변화협약과 관련된 환경산업” 특히 그 지원을 위한 법제에 논의를 집약시켰다. 기후변화협약을 이미 반영한 법률과 반영중에 있는 법률의 사례를 검토한 후, 이들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다. 이와 같이 정리된 입법적 쟁점에 따라 법제 개선의 과제를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특히 입법적 개선을 위한 기본적 체제를 구성하고,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법률의 목록을 구체화하며, 개별적인 목록 하나 하나에 반영이 필요한 입법적 쟁점의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II. 기후변화협약이 요구하는 각국의 환경산업관련 입법적 과제

1. 기후변화기본협약·교토의정서와 환경산업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산업과 관련한 각국의 조치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형성하는 것은 「기후변화기본협약」이다. 이 협약은 지구의 기후변화와 그 부정적

4) 국무총리실에 설치되어 있는 기후변화대책기획단 홈페이지 <http://www.tfcc.go.kr/> 참조

영향이 인류의 공통의 문제로 등장했음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고, 향후 온실가스 배출의 증가로 인하여 추가적인 지구 온난화의 문제 등이 악화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재앙을 우려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⁵⁾

기후변화기본협약에 규정된 내용⁶⁾ 중 환경산업과 관련된 사항은 이 협약 제3조에 규정된 “원칙(Principle)” 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협약당사국은 기후변화의 원인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고 그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치에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함과 관련된 모든 경제 분야와 관련된 종합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협약당사국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기본협약은 그 명칭 그대로 “기본적인 사항” 즉 원칙의 설정과 각국의 역할의 제시 및 이를 실천하기 위한 조직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담고 있다. 기본협약에는 특히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저감하는 산업과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산업이라는 의미의 환경산업에 대한 구체적 및 실천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5)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이 협약의 법적 성격은 국제기구에 의한 조약, 즉 성문의 국제법이며, 그 주관기구는 국제연합(UN)이다. 이 협약은 1992년 5월 9일 채택되었고, 1994년 3월 21일 발효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192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조약에 비준하였으므로 이 조약은 우리나라에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협약은 전문과 26개의 조문(Article) 및 2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협약의 원문과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실천을 위한 국제적 노력과 그 진행상황에 관하여는, http://unfccc.int/essential_background/convention/items/2627.php 참조

6) 이 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기후변화와 관련한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제1조 Definition), ②이 원칙에 가입하고 이를 적용하는 모든 국가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제3조 Principles) 들을 설정한다. ③협약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가 실행하여야 할 기본적 역할을 정한다(제4조 Commitments), ④각 국가의 역할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침을 제시한다. ⑤특히 연구와 체계적인 관측(제5조), 교육, 훈련, 공공의 자각을 일깨우기 위한 홍보(제6조) 등이다. ⑥협약의 지속적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국제적인 조직을 설치한다. 이에 협약당사국의 회의조직(제7조 Conference of the Parties), 사무국(제8조 Secretariat), 과학적, 기술적 조언을 위한 보조기구(제9조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와 그 적용을 위한 보조기구(제10조) 등이 포함된다. ⑦협약의 구체적 실천과 국제 조직의 운영 등을 위한 재정적 체계를 수립한다(제11조 Financial Mechanism), ⑧협약의 이행을 위한 정보교환을 위한 법적 장치를 설정한다(제12조), ⑨분쟁의 해결을 위한 체제를 설정한다(제14조). <http://unfccc.int/resource/docs/convkp/conveng.pdf> 참조

기본협약에 규정된 제반원칙의 구체적 실천을 위하여 각종 후속 협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중 환경산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협약으로 교토의정서를 들 수 있다.⁷⁾

교토의정서는 환경산업과 관련하여 각국에 대한 다양한 입법적 대응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부록에서 대응조치가 필요한 환경산업의 범위를 설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기후변화기본협약과 교토의정서가 각국에 요구하는 환경산업과 관련된 법적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 각국의 환경산업 관련 입법적 과제

(1) 기후변화협약관련 환경산업의 범위

기후변화협약 중 특히 교토의정서 부록은 각국의 입법적 및 이에 따른 구체적 실천적 대응이 필요한 환경산업의 범위를 설정한다.⁸⁾

첫째, 에너지 분야의 산업이다. 이 분야에는 연료의 연소(Fuel Combustion)와 관련된 에너지 산업, 제조업과 건설업, 수송업 등과 연료의 발산(Fugitive Emission from Fuel)과 관련된 고체연료, 석유와 천연가스 등과 관련한 산업이 포함된다.

둘째, 산업적 과정 (Industrial Processes) 이다. 이에는 광업 (Mineral Products),

7)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교토의정서는 UN 기후 변화 기본협약에 연결된 국제협약으로서 그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괄하는 것이다. 교토의정서는 기본협약과 같이 국제기구에 의한 협약의 일종이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기본협약은 “기본적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실천을 위한 구체적, 구속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교토의정서는 기본협약의 세부 실천협약으로 작용한다. 이는 국제법의 일부가 된다. 교토의정서는 1997년 12월 11일 채택되었고, 2005년 2월 15일 발효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183개국이 비준하고 있다. 이 의정서는 전문과 28개의 조문 및 2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토의정서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실천을 위한 국제적 노력과 그 진행 상황에 관하여는 http://unfccc.int/kyoto_protocol/items/2830.php 참조

8) 교토의정서 부록 A는 먼저,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하여 범세계적으로 저감해야 할 온실가스의 종류로 CO₂, CH₄, N₂O, HFCs, PFCs, SF₆ 등을 제시하고, 그 실천을 위한 범 세계적 노력의 내용을 열거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http://unfccc.int/resource/docs/convkp/kpeng.pdf> 참조

화학 산업 (Chemical Industry), 철강 생산 (Metal Production) 등과 할로겐화 탄소 (Halocarbons)와 황 헥사플루오화합물(Sulphur Hexafluoride)의 제조와 소비 등과 관련한 산업이 포함된다.

셋째, 솔벤트(Solvent)와 기타 제품의 이용과 관련된 산업이다.

넷째, 농업분야이다. 이에는 장의 발효(Enteric Fermentation), 비료 경영(Manure Management), 벼 재배(Rice Cultivation), 농업의 경작(Agricultural Soils), 사바나 태우기(Prescribed Burning of Savannas), 농업적 찌꺼기 들판 태우기(Field Burning of Agricultural Residues) 등과 관련한 산업이 포함된다.

다섯째, 폐기물 분야의 산업이다. 이에는 토양에 대한 고체폐기물 매립(Solid Waste Disposal on Land), 하수처리(Waste Water Handling), 폐기물 소각(Waste Incineration) 등과 관련한 산업이 포함된다.

(2)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환경산업관련 입법적 과제의 내용

기후변화기본협약이 규정한 기본적 원칙에 따라 교토의정서가 구체적으로 협약당사국에게 환경산업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입법적 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협약당사국은 각 국가별로 할당된 기후변화물질의 배출 한계와 그 감축의무를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발달을 이룩하기 위하여 각국의 상황에 부합하는 세심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둘째, 협약당사국은 위에서 언급한 환경산업과 관련한 개별적인 범위 하나하나에 대하여 법제를 개선하고 그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예컨대 에너지의 효율성 증진, 온실가스의 저감, 기후변화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형태의 농업의 진흥,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와 재생 가능한 에너지(신·재생에너지)와 이산화탄소의 분리기술을 포함한 혁신적인 환경기술의 연구, 개발 및 그 이용의 증진,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모든 온실가스 배출관련 산업체에서 이루어지는 노력에 대한 재정지원,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과 같은 시장의 불완전성을 줄여나가기 위한 정책의 실행,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과 에너지의 생산, 운반 및 분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저감을 위한 정책의 실행 등이 그 것이다.⁹⁾

아래에서는 먼저, 미국과 유럽공동체의 법·정책적 대응사례를 제시한 후, 우리나라의 대응 사례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입법적 쟁점과 과제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Ⅲ. 미국과 EU의 법·정책적 대응 사례

기후변화협약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각 국은 환경산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입법을 하고 있다. 각 국의 입법사례에 대하여는 다양한 연구에서 그 내용이 보고되고 있다.¹⁰⁾ 본 연구에서는 환경산업과 관련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이들 중 미국과 유럽연합의 사례에 국한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1. 미국

미국의 경우 연방국가의 특성상 기후변화와 관련한 환경산업에 대한 정책은 연방과 각 주가 각각의 입법적 근거로 시행하고 있다. 각 주의 경우 그 상황을 고려한 개별성·구체성을 가지는 반면, 연방정부차원의 경우에는 포괄적 정책(comprehensive policy to address climate change)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¹¹⁾

9) 교토의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의정서와 관련하여, 유엔협약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를 보충적으로 정의한다(제1조). ②각 협약의 당사국이 온실가스의 양적 배출한계를 준수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각종 조치를 설정한다.(제2조) ③각 협약의 당사국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동안 1990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수준보다 5% 이상 감축할 의무를 설정하며, 그 실천방안의 하나로서 탄소배출권의 거래체계를 구축한다(제3조) ④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의정서의 이행과 관련한 감시 및 실행체계를 구축한다(제4조 내지 제11조) ⑤이 협약의 범세계적 이행체계 구축을 위하여 “청정개발체계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을 수립한다. (제12조 이하)

10) 특히, 김현준, 기후보호의 법적 과제 - 주요외국의 법제 현황 및 우리의 입법방향, 한양법학 제23집 (2008. 6.), 47쪽 이하 참조

11) 미국의 사례에 대하여는 Jutta Brunnee, *The United States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 Living with an Elephant*, EJIL 2004 15(4); Kosloff, Laura H.; Trexler, Mark C.; Nelson, Hal, *Outcome-Oriented Leadership: How State and Local Climate Change Strategies Can Most Effectively Contribute to Global*

연방정책의 목표는 ①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느리게 함(Slowing the growth of emissions), ②과학과 기술 및 제도를 강화함 (Strengthening science, technology and institutions), ③국제협력을 증진함 (Enhanc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¹²⁾

환경산업과 관련하여 첫째, 미국 연방정부는 위와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목표로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개년 간 미국경제에 있어 온실가스와 관련된 집중도의 감축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를 막고, 더 나아가 배출량 감소까지 꾀함을 국가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¹³⁾

둘째, 미국 연방정부는 기후변화 기술프로그램 (Climate Change Technology Program)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후변화 기술프로그램은 대통령의 국가 기술 변화 기술 제안 (National Climate Change Technology Initiative)에 따라 연방에너지부와 연방환경청 등 다양한 부서의 참여아래 30억 달러의 연방예산을 투입하여 ①에너지의 최종소비와 그 하부구조(infrastructure)로 부터의 배출가스 감축, ②에너지 공급, 특히 에너지 방출이 없거나 에너지 방출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의 상업화, ③이산화탄소의 포획, 저장, 분리, ④이산화탄소가 아닌 다른 온실가스의 감축, ⑤온실가스 방출의 측정 및 감시의 확대 등을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¹⁴⁾

Warming Mitigation, 14 Widener L.J. 2004, 173; Peterson, Thomas D., Evolution of State Climate Change Policy in the United States: Lessons Learned and New Directions, 14 Widener L.J. 2004, 81; Rabe, Barry G., North American Federalism and Climate Change Policy: American State and Canadian Provincial Policy Development, 14 Widener L.J. 2004, 121 참조

12) 미국의 경우 연방환경청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이 총괄부서가 되어 국제규범의 실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규범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 정책의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적 목표의 설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범 국가적인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협약의 수립 및 시행, 기후변화 기술프로그램 및 그 실천전략의 수립 및 시행, 기후변화 과학프로그램 및 그 실천전략의 수립 및 시행, 국제 협력의 증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미국 연방환경청 홈페이지 <http://www.epa.gov/climatechange/> 참조

13) National Goal to Reduce Emissions Intensity :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reducing the greenhouse gas intensity of the American economy by 18 percent over the 10-year period from 2002 to 2012. This initiative puts America on a path to slow the growth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to stop, and then reverse that growth. <http://www.epa.gov/climatechange/policy/intensitygoal.html> 참조

셋째, 기후변화 과학프로그램 (Climate Change Science Program)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후변화 과학프로그램은 ①지구의 과거와 현재의 기후와 환경에 대한 지식의 증강, ②지구의 기후와 관련 체계에 변화를 일으키는 물질의 힘의 정량화 능력의 증강, ③지구의 기후와 관련 체계 변화의 미래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의 감축, ④기후와 관련된 지구 변화에 대한 다양한 자연적 및 인위적인 예외 시스템에 대한 민감 및 그 적응성의 이해, ⑤기후다양성과 그 변화와 관련된 위기와 기회의 관리에 관한 지식의 탐구 등을 그 목표로 하며, 이 목표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수립되어 연방과학기술청과 예산경영청(OMB) 및 다양한 연방부서의 참여하에 시행한다.¹⁵⁾

기후 내지는 대기질에 관한 연방정부 차원의 가장 중요한 법률은 미국 연방 대기환경보전법 (THE CLEAN AIR ACT)이다. 이 법률은 대기오염방지와 그 통제를 위하여 대기질의 보존과 배출의 규제, 오존층 보호, 대기질 악화 방지를 위한 각종 계획적 조치 등과 자동차, 비행기 등에 대한 배출표준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다만, 이 법률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환경산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미국은 2008년 통합적용법(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H.R. 2764; Public Law 110-161)을 제정하였다.¹⁶⁾ 미 연방의회는 연방환경청에 대하여 온실가스 보고규칙을 출판하도록 위임하였다. 이 규칙은 미 연방의 모든 부처가 그 소관사

14) Climate Change Technology Program :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s investing in a diverse portfolio of energy technologies with the potential to yield substantial reductions in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Climate Change Technology Program (CCTP) the U.S. continues to be a leader in climate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http://www.epa.gov/climatechange/policy/cctp.html> 참조

15) The Climate Change Science Program (CCSP) is one of the largest components of the U.S. climate program. CCSP is a multi-agency effort focused on improving our understanding of the science of climate change and its potential impacts. The CCSP integrates federal research on climate and global change, as sponsored by thirteen federal agencies and overseen by the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the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the National Economic Council and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http://www.epa.gov/climatechange/policy/ccsp.html> 참조

16) 미국 연방의 입법적 조치에 관하여는, Advance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Regula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under the Clean Air Act <http://www.epa.gov/climatechange/anpr.html> 참조

항에 관련된 온실가스 쿼터와 그 감축을 위한 예산의 지출 및 각종 행정적 조치를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의 시행에 발맞추어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기업들 간에 다양한 협약을 체결하여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들 협약은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다. 구체적인 협약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방과 각주간의 깨끗한 에너지-환경 파트너십 협약(Clean Energy-Environment State Partnership)을 들 수 있다. 이 협약은 연방과 각주가 고효율의 청정에너지를 개발하고 적용하여 깨끗한 환경에 이바지하는데 파트너가 됨을 약속하고, 이 약속에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둘째, 연방환경청과 기업 간의 환경선도자협약(Climate Leaders)을 들 수 있다. 이 협약은 연방환경청과 참여기업이 동반자가 되어 포괄적인 기후변화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함에 관한 협약이다. 미국 연방 50개 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연방환경청이 동반자가 되어 이들을 지원한다.

셋째, 전력과 증기에너지 파트너십 협약(Combined Heat and Power (CHP) Partnership)을 들 수 있다. 이 협약은 특정 연료소비를 통한 전력의 생산과 증기에너지 생산에 있어 그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율성, 청정성을 기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파트너십을 통하여 에너지사용자, 전력 및 증기 에너지 생산 산업과 각 주 및 지방정부가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넷째, 에너지 스타 인증(ENERGY STAR)을 들 수 있다. 에너지 스타 인증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에너지 효율성이 있는 상품을 인증함으로써 그 존재를 확인하고, 그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는 자발적인 장치이다. 1992년에 시작되었으며, 현재 40개 이상의 제품분야에서 1400개 이상의 제조업 사업장이 참여하고 있다.

다섯째, 교통과 대기 질에 관한 자발적 프로그램(Transportation and Air Quality Voluntary Programs)을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오염을 저감하고 대기질을 증진하기 위하여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는 화물수송, 버스운송사업 등 교통분야와 관련된 중소기업, 시민단체, 수공업자, 무역사업자, 각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참여한다.¹⁷⁾

2. 유럽공동체

유럽의 경우 각 국가적 차원 보다는 “유럽공동체 전체의 차원”에서 기후변화협약의 개별적 요소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세우고 이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규범을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다. 이는 환경산업과 관련하여 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유럽공동체는 교통의정서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2008년도부터 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의 수준을 1990년의 수준보다 8% 감축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담아 2000년 6월 유럽기후변화프로그램 (European Climate Change Programme (ECCP))을 채택하였으며, 이를 발전시켜서 제2차 유럽기후변화프로그램 (The second European Climate Change Programme (ECCP II))을 채택하였다.¹⁸⁾

유럽공동체의 경우 국제연합의 기후변화 협약의 내용과 그 개별적 요소 하나하나에 대응하여 유럽차원에서 각 공동체의 당사국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 제반 영역에 대한 규범체계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중 환경산업과 관련한 주요한 사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¹⁹⁾

첫째, 배출권인증 및 배출권 거래사업과 관련하여 「배출권 인증규칙」 (Emissionszertifikaterichtlinie)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²⁰⁾

둘째, 「에너지유효성활성화프로그램」 (Specific Action Program for Vigorous

17) 그 밖에도 지구온난화 위험성이 높은 가스의 감축을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High GWP Gas Voluntary Programs), 메탄가스 감축을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Methane Voluntary Programs), 현명한 폐기물 감축을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WasteWise) 등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참조 <http://www.epa.gov/climatechange/policy/neartermghgredution.html>

18) 참조 http://ec.europa.eu/environment/climat/home_en.htm

19) 유럽공동체의 입법사례에 대하여는 Andreas Troge, Neuer Aufbruch in der Umweltpolitik, Jahrbuch des Umwelt- und Technikrechts 2006, Heft 90, S. 7; Christoph Enders, Die Inkorporation des Emissionshandels in das deutsche Luftreinhalteungsrecht - normativer Rahmen und aktuelle Rechtsprobleme, LKV 2007 Heft 5, S. 193; Karsten Runge/ Thomas Schomerus, Klimaschutz in der Strategischen Umweltprüfung - am Beispiel der Windenergienutzung in der Ausschließlichen Wirtschaftszone, ZUR 2007 Heft 9, S. 410; Wolfgang Köck, Klimawandel und Recht - Adaption an Klimaänderungen: Auswirkungen auf den Hochwasserschutz, die Bewirtschaftung der Wasserressourcen und die Erhaltung der Artenvielfalt - ZUR 2007 Heft 9, S. 393 등 참조

20) 2003년 10월 13일 제정, 유럽공동체규칙 2003/87/EG ABl. Nr. L. 275

Energy Efficiency SAVE)을 통하여 이산화탄소 발생억제를 위한 에너지 유효성 증진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²¹⁾

셋째, 「건축물의 종합적 에너지효율성 증진 규칙」을²²⁾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건축물의 설계부터, 시공, 인테리어 등 전반에 걸쳐 에너지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사업이 유럽공동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건축물 등의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유효성 증진 등을 통한 이산화탄소의 발생 억제를 도모하고 환경디자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환경디자인 규칙」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²³⁾

다섯째, 새로운 에너지원 발굴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럽공동체 전기시장에서의 신·재생에너지원을 통한 전기 생산 촉진 규칙」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²⁴⁾

여섯째, 이산화탄소 발생억제 및 에너지 효율성 증진,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위한 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럽에너지기술촉진규정」이²⁵⁾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일곱째, 자동차 회사들과의 환경협약을 통한 신차 출고시 이산화탄소 저감 의무화, 이산화탄소 발생량에 따른 자동차세 부과, 자동차 연료소비에 관한 정보제공,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철도 및 선박수송량의 확대 등을 위하여 「유럽공동체 자동차 연료소비 절약 전략」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여덟째, 농업분야에 있어 축산업, 비료의 투입 등에 있어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을 위하여 「메탄가스 등 농업으로 인한 온실가스발생 저감 전략」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산림경영을 통한 산소의 생산 및 이산화탄소의 저감전략」이 마련되어 있다.

21) “똑똑한 에너지 - 유럽” (“Intelligente Energie - Europa)를 구호로 한 프로그램이다. 에너지 유효성을 증진시키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주내용으로 하며, 가전제품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제품 정보규칙, 액체 또는 가스형태를 연료로 하는 새로운 난방용가열탱크의 효율성적도에 관한 규칙, 전기절약형 사무용 기구 규칙 등 다양한 규칙이 이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22) 2002년 12월 16일 제정, 유럽공동체규칙 2002/91/EG

23) 2005년 7월 6일 제정, 유럽공동체규칙 2005/32/EG

24) 2001년 9월 27일 제정, 유럽공동체규칙 2001/77/EG

25) 1990년 1월 20일 제정 유럽공동체규정 2008/90 THERMIE Programm

아홉째, 폐기물과 관련하여 「폐기물 매립을 통한 메탄가스 등 온실가스 발생 저감 전략」, 「포장쓰레기의 방지 및 처리규칙」 등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IV. 우리나라의 입법적 대응사례

우리나라의 입법적 대응 사례로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환경산업의 지원을 위한 입법적 대응에 관하여는 이미 입법이 이루어진 경우와, 현재 입법이 추진 중인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²⁶⁾

1. 입법이 이미 이루어진 사례

기후변화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환경산업 관련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한 사례로 다음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첫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다. 이 법률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시

26) 기후변화에 대한 범정부적 조직에 관한 법률적 근거는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만, 현재 입법예고 중인 “기후변화대책기본법”에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설치근거가 포함되어 있다. 법률은 제정되지 아니하였지만 국무총리 훈령차원에서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기구를 구성하고 이를 운용하고 있다. 기후변화대책위원회는 기후변화대책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환경부장관 등 관련 행정각부의 장관과 소방방재청장·기상청장 등 관련 외청의 장이 된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후변화대책조정협의회가 설치되며, 조정협의회에 기능별로 실무대책반을 둔다. 실무대책반의 편성은 협상대책반(외교통상부), 감축대책반(지식경제부), 적응대책반(환경부), 과학연구개발반(교육과학기술부), 재원대책반(기획재정부)으로 하며, 팔호안의 부처가 주무부처가 된다. 위원회와 조정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실무대책반을 총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기획단을 둔다. 조정협의회는 기후변화대책에 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학식과 경험을 갖춘 학계·산업계·언론계 및 유관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들 수 있다.

책과 실천과제를 설정하며,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설비자금의 지원,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청정생산기술의 이전·확산,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추진, 환경경영체제의 인증, 온실가스배출 저감조치 등의 규정을 도입하였다.²⁷⁾

둘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들 수 있다.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을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개정취지는 “최근의 지속적인 고유가추세 및 기후변화협약 등 에너지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활성화 등을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의무화 대상은 신축 건축물에 한정되고 증축 또는 개축 건축물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활성화에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설치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부진한 이용·보급실태를 개선하려는 것임”이다.²⁸⁾

셋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다.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 법의 개정 이유는 “폐기물관리정책의 방향을 지금까지의 안전처리 및 단순 재활용으로부터 발생억제와 자원화 확대로 전환하기 위하여 자원순환의 개념과 원칙을 도입하여 규정하고, 제품 및 개발사업의 자원 순환성 향상, 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폐기물 전처리시설(전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새로이 규정하거나 강화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함”이다. 이 법의 개정을 통하여 자원순환의 개념 및 기본원칙을 규정하였다. 특히 3R[발생억제(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체계에 입각한 재활용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자원순환의 개념을 정립하고 원재료·제품 등을 제조·가공·수입·판

27) 이 법률은 2008.03.28 법률 제9013호로 일부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사항은 2008.9.29부터 시행된다.

28) 이 법은 일부개정 2008.03.14 법률 제8899호로 일부 개정되었으며, 그 시행일은 2009.3.15이다.

매 또는 소비하거나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재활용·에너지회수 등으로 순환 이용하도록 하는 등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다.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 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 재활용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자원순환 정보의 제공 등 자원 순환에 관한 다양한 법적 장치들을 새로이 도입하고 있다.²⁹⁾

2. 입법이 추진 중인 사례

아직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기후변화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로 다음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첫째, 「기상산업진흥법(안)」이다. 이 법은 “기상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기상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상산업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에 따른 기후관련 산업으로는 ① 기상산업, ②기상예보업, ③기상감정업, ④기상건설팅업, ⑤기상장비업 등이 규정되어 있다.³⁰⁾ 이 법률은 기상산업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기상사업(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건설팅업을 포괄함)의 등록, 기상산업의 지원, 기상정보의 유통 및 활용 촉진, 기상예보사의 면허 등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기상법 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상법은 “기후변화”란 “인간 활동이나 자연적인 요인으로 대

29) 이 법은 2008.3.21 법률 제8948호로 일부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일부 조항은 2009.3.22부터 시행된다.

30) ① “기상산업”이란 기상 관련 상품을 제조·공급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산업을 말한다. ②“기상예보업”이란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예보, 즉 기상현상에 관하여 관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의 기상상태를 예상하여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기상감정업”이란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감정, 즉 기상현상에 관하여 관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지점의 기상현상을 추정하거나 그 기상현상이 특정 사건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을 판단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기상건설팅업”이란 기상정보를 분석·평가하여 경영활동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⑤“기상장비업”이란 기상측기기를 제작·수입·설치하거나 수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법률은 2009년 10월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기가 평균상태를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기상업무”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영향조사, 기후변화 감시 및 기후 예측을 포함시키고 있다. 기상법 개정법률(안)은 기상청장에게 지구대기 등 기후를 감시하고, 지구대기감시관측 [지구대기감시를 위하여 성층권 오존층, 대기 중의 주요 온실가스 농도, 지역 대기 질(大氣質)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가스상·입자상 물질 등에 대하여 행하는 관측을 말한다. 이하 같다]자료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여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고할 의무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 관한 영향조사 및 변화 추세 예측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 법률안은 기상청장에게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후에 관한 전망을 발표할 의무”와 “기후자료를 수집·관리하고 각종 응용자료를 생산하여 그 통계를 주기적으로 공고할 의무”를 부과한다.³¹⁾

셋째,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이다. 이 법(안)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전지구적인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환경보호·기술의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육성 등을 통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등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사회로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기후변화대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³²⁾ 이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 및 성과관리를 하도록 함, ②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위한 행정조직으로서의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설치·구성과 역할, 법적 위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함, ③위원회는 기후변화대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기획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의 수립·시행·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

31) 이 법률의 개정법률(안)은 “법정부 차원의 기후변화정책이 원활히 수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기후변화 추세를 예측하도록 함”을 그 주요 목적 중의 하나로 하여 2009년 9월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32)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의 감축·적응·연구개발·국제협상 등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법률적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 법률(안)은 2008년 8월 29일 입법예고 되었으며, 2008년 11월 현재 정부입법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의·의결함, ④국내의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산정을 통하여 효과적인 기후변화대책의 추진을 위해 정부는 매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통계를 작성·분석·검증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⑤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도모하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자(공공부문 포함)가 스스로의 활동에 의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파악, 산정하고 산정된 배출량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⑥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할당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제한하고 사업자들 사이에서 할당받은 배출허용량을 시장원칙에 따라 거래하도록 함, ⑦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 교환, 기술 협력 및 공동조사·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의 증진을 도모하도록 함, ⑧기후변화 대응 관련하여 국내·외의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기금을 설치·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IV.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사례의 입법적 쟁점과 법제개선의 과제

1.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사례의 입법적 쟁점

(1) 추진된 입법과 관련한 법적 쟁점

기후변화기본협약과 교토의정서는 구체적인 환경산업의 범위를 설정하고, 이들 각각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인 입법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EU의 경우에는 위의 사례에서 연구·검토한 바와 같이 기후변화협약이 요구하는 모든 분야에 대하여 프로그램을 세우고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며 구체적인 실천적 조치들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 이미 이루어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입법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입법적 쟁점으로는 이들 입법이 그 범위와 내용에 있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 가라는 점이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추진된 입법적 사례로는 「환경친

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정도를 들 수 있다.

총론적 입법으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조치를 취하고, 설비자금의 지원 및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등의 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법률은 원론적이며, 막연한 내용을 담고 있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국가의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프로그램을 세우고 추진함에 역점을 두고 있다.

각론적 입법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관련된 한정된 입법만을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과제의 이행을 위하여 추진된 입법은 아직 부분적이며, 그 내용도 제한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³³⁾

(2) 추진 중인 입법과 관련한 입법적 쟁점

위와 같이 이미 추진된 입법사례와 관련된 입법적 쟁점은 현재 추진 중인 입법과 관련하여서도 동일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현재 추진 중인 입법으로는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 기상산업진흥법(안), 기상법개정법률(안)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의 경우 기후변화 문제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조직을 설치하고, 국가적으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틀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다만, 이 법률(안)은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적 조치를 위한 행정조직과 기금의 설치에 그 내용이 집중되어 있을 뿐이며, 구체적인 정책적, 재정적 조치에 대하여는 일부의 영역에서 몇 가지 선언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에서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 법률의 제정은 기후변화

33) 김현준, 기후보호의 법적 과제 - 주요외국의 법제 현황 및 우리의 입법방향, 한양법학 제23집 (2008. 6.), 47쪽 이하 참조

에 대응하는 입법적 조치의 새로운 시작이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입법적 조치의 필요성을 널리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상산업진흥법(안)은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기상 이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상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함에 대한 근거를 설정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기상법 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기후변화를 직접 측정하는 행정청인 기상청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에 관한 다양한 법적 근거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기상법 개정법률(안)은 기상산업진흥법의 제정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기상산업진흥법과는 별개로 입법이 추진되는 관계로 그 일부에서 상호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기상사업자의 사업권한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게 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기상산업진흥법이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입법으로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기상법은 기상관련 법률의 총괄적 기본법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기상산업진흥법의 입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상법의 정비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미 추진된 입법과 현재 추진 중인 입법은 기후변화에 대하여 UN협약이 요구하는 입법적, 정책적, 재정적 조치의 일부를 감당하고 있을 뿐, 전 영역을 망라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 내용도 매우 제한적이다. 국가적 입법과 정책의 모든 영역에서 기후변화를 직접 언급하고, 이를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이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³⁴⁾

2. 법제 개선의 과제

(1) 입법적 보완계획의 수립 및 실천

위에서 예시한 기후변화협약 관련분야와 관계된 개별적인 법률 하나하나에 대한

34) Andreas Troge, Neuer Aufbruch in der Umweltpolitik, Jahrbuch des Umwelt- und Technikrechts 2006, Heft 90, S. 7 ff.; Wolfgang Köck, Klimawandel und Recht - Adaption an Klimaänderungen: Auswirkungen auf den Hochwasserschutz, die Bewirtschaftung der Wasserressourcen und die Erhaltung der Artenvielfalt - ZUR 2007 Heft 9, S. 393 ff.

입법적 조치를 하려면 기후변화 전체에 대한 밑그림에 기초한 계획이 필요하다. 입법이 추진 중인 「기후변화대책기본법」에는 정부에 대하여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종합계획을 실천하려면 이 계획의 내용과 관련된 개별적인 분야 하나하나에 대한 근거법률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후변화대책기본법」에 따른 종합계획의 내용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과 제도의 개선”이 포함되어 있을 뿐, 기후변화적응 전반에 관한 법령을 포함한 제도의 개선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법률은 이러한 의미에서 부분적이고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하여는 부처협의 및 국회심의 과정에서 그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2) 기후변화협약이 요구하는 과제에 대한 개별·구체적 대응입법 목록의 발굴

입법적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자 할 경우 기후변화협약이 요구하는 과제를 대입하여 개별·구체적으로 대응 입법을 하여야 할 목록이 발굴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도교의정서에는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개별적인 분야 하나하나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그 순서에 따라 개별적인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분야와 법률의 목록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에너지 분야이다. 이 분야에는 연료의 연소와 관련된 에너지 산업, 제조업과 건설업, 수송업 등과 연료의 발산과 관련된 고체연료, 석유와 천연가스 등이 포함된다. 이 분야에 대하여는 이미 「에너지기본법」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보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입법적 보완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 사업법」, 「한국석유공사법」, 「석탄산업법」, 「대한석탄공사법」 등 개별적인 법률에 연료의 발산의 저감과 관련한 기후변화협약의 내용을 포함하는 입법적 조치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관련된 개별 법령 하나 하나의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산업적 과정이다. 이 분야에는 광업, 화학 산업, 철강 생산 등과 할로젠화 탄소와 황 헥사플루오화합물의 제조와 소비 등이 포함된다. 이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 포괄적 입법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광업법」,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적인 법률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입법적 보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특히 메탄(CH₄)·이산화질소(N₂O)·수소불화탄소(HFCs)·과불화탄소(PFCs)·육불화황(SF₆) 등 이산화탄소를 제외한 다른 온실가스와 관련한 산업적 과정에 대한 개별적 관리입법의 보완이 아직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관련된 개별 법령 하나 하나의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농업분야이다. 이 분야에는 장의 발효, 비료 경영, 벼 재배, 농업의 경작, 사바나 태우기, 농업적 찌꺼기 들판 태우기 등이 포함된다. 농업분야와 관련하여서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원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특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비료관리법」, 「낙농진흥법」,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농약관리법」, 「사료관리법」, 「축산법」 등 개별적인 법률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입법적 보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넷째, 폐기물 분야이다. 이 분야에는 토양에 대한 고체폐기물 매립, 하수처리, 폐기물 소각 등이 포함된다. 이 분야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과 같이 기후변화협약의 실천을 염두에 두고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특정 산업영역에 대한 구체적 지원책을 강화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는 일부에 지나지 아니한다.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개별적인 법률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입법적 보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³⁵⁾

(3) 입법적 보완을 위한 내용의 정리

위와 같이 발굴된 개별적인 입법목록에 대한 대응 입법을 하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발굴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35) 특히 청정개발체제와 관련하여서는, 이재협, 교토의정서상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의 법적 문제, 환경법연구 제29권 제1호(2007), 319쪽 이하 참조

첫째,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에 포함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에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하여 ①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³⁶⁾ 환경영향평가에 탄소집약도·생태효율성 등 개념 및 기준의 반영을 검토함으로써 기후변화영향성 검토를 새로운 규제가 아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제도로 활용함을 들고 있다.

둘째, 기후변화 적응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적 컨텐츠의 발굴이 필요하다.

먼저, 온실가스의 저감을 위한 신산업의 발굴과 지원 및 육성에 관한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의 발굴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온실가스의 저감을 전문으로 하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경우 그 실효성 있는 육성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탄소배출권의 실제적 거래와 관련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 탄소배출권의 실제적 거래와 관련한 산업체계를 국제적인 동향에 발맞추어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예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①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측정 장치의 생산 및 유통과 관련한 산업체계, ②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국가적으로 일시에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측정망 내지는 측정 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용과 관련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운용 등과 관련한 산업체계, ③탄소배출권의 증권화, 상장구조화, 전문적인 거래 시스템의 설치 및 운용 등과 관련한 산업체계, ④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탄소배출권의 거래와 관련된 산업에 대한 컨설팅 산업의 체계 등이 그 것이다.³⁷⁾

셋째, 이들과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을 비롯한 각종 산업피해에 대한 보험산업과 관련한 신산업에 관한 입법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정 생산”, “청정 소비”, “청정 생활” 등과 관련한 신산업에 관한 입법적 조치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 계통의 산업은 기후변화 유발물질의 저감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모든 사항이 복합되어 있는 산업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 분야의 산업영역으로는 ①녹색건설, 녹색주거환경 및

36)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효율적·체계적 대응 도모하는 것이다. 그 방안 중의 하나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서 규정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후변화대응 성과를 정부업무평가와 연계 평가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기후변화대응 점검·평가 실시를 입법적 내용 중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37) 윤순진, 기후불의와 신환경 제국주의: 기후담론과 탄소시장의 해부를 중심으로, 환경정책 제16권 제1호(2008.5.), 135쪽 이하 참조

산업환경의 조성 산업, ②공기질 정화 산업, ③수자원 정화 및 순환사업과 해수 담수화 산업, ④녹색 교통산업 및 교통시설 건설 및 정비산업, ⑤자원 순환형 인프라 구축사업, ⑥삼림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미생물 에너지 등과 같은 기후변화 적응 관련 에너지의 생산, 유통, 소비 등과 관련된 산업등을 들 수 있다.³⁸⁾

위와 같이 환경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행정법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적 콘텐츠를 정리하고자 할 경우 특히 다음의 쟁점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먼저, 해당 환경산업분야의 육성과 관련한 정책이 프로그램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경우 기후변화와 관련한 환경산업을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이를 육성함을 선언하고 있는가가 검토되어야 한다. 기후 변화협약이 요구하는 각종 입법적 과제의 이행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는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음으로, 환경산업의 육성이 해당 법률상의 계획의 체계에 포함되어 있는가, 되어 있다면 그 내용의 구체성 및 실천가능성이 담보되어 있는가가 검토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책과 계획의 틀을 기초로 하여 환경산업의 육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관련된 규정의 종합적인 정비의 필요성, 환경산업 영역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 신산업의 직접 또는 간접적 지원을 위한 법적 장치의 도입이 필요성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신산업의 직접 또는 간접적 지원 장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는 ①환경산업 영역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자금지원, ②환경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 인프라의 구축 및 각종 금융지원을 위한 담보제도, 수출 등과 관련한 보증제도, 보험제도 등 지원제도 정비, ③환경산업 영역에 대한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감면제도의 도입 및 확충, ④환경산업 영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공사, 공단) 등의 우선 구매의 제도화, ⑤환경산업 영역에 대한 행정기관의 기술지도 등 행정지도를 통한 컨설팅과 민간 컨설팅 산업의 활성화와 관련된 법적 장치 제도화 등을 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³⁹⁾

38) Wolfgang Köck, Klimawandel und Recht – Adaption an Klimaänderungen: Auswirkungen auf den Hochwasserschutz, die Bewirtschaftung der Wasserressourcen und die Erhaltung der Artenvielfalt – ZUR 2007 Heft 9, S. 393 ff.

39) Rabe, Barry G., North American Federalism and Climate Change Policy: American State and Canadian

다만, 위와 같은 법적 장치를 제도화하고자 할 경우 행정절차법의 기본원리인 공정성과 투명성 및 신뢰성이 해당 법률의 내용, 특히 규제와 지원 장치 속에 구체적으로 담겨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V. 요약 및 결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산업과 관련한 각국의 조치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형성하는 것은 「기후변화기본협약」이다. 협약당사국은 기후변화의 원인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고 그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치에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함과 관련된 모든 경제 분야와 관련된 종합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협약당사국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기본협약의 실천을 위한 교토의정서는 협약당사국이 각 국가별로 할당된 기후변화물질의 배출 한계와 그 감축의무를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발달을 이룩하기 위하여 각국의 상황에 부합하는 세심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기후변화협약의 실천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특히 환경산업과 관련된 내용은 교토의정서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각국은 에너지산업, 광업과 철강생산 등 산업적 과정, 솔벤트(Solvent)와 기타 제품의 이용과 관련된 산업, 농업, 폐기물 산업 등에 있어 기후변화물질의 저감과 기후변화에의 적응과 관련한 산업적 활동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요구한다.

미국연방정부는 환경산업과 관련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목표로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개년 간 온실가스배출량을 18% 감축시켜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를 막고, 더 나아가 배출량 감소까지 꾀함을 국가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기후변화기술프로그램과 기후변화 과학프로그램(Climatic Change Science Program)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Provincial Policy Development, 14 Widener L.J. 2004, p. 121; Andreas Troge, Neuer Aufbruch in der Umweltpolitik, Jahrbuch des Umwelt- und Technikrechts Heft 90, 2006, S. 7 ff.

유럽의 경우 각 국가적 차원 보다는 “유럽공동체 전체의 차원”에서 기후변화협약의 개별적 요소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세우고 이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규범을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다. 이는 환경산업과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유럽공동체는 교통의정서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2008년도부터 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의 수준을 1990년의 수준보다 8% 감축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담아 2000년 6월 유럽기후변화프로그램 (European Climate Change Programme (ECCP))을 채택하였으며, 이를 발전시켜서 제2차 유럽기후변화프로그램 (The second European Climate Change Programme (ECCP II))을 채택하였다. 유럽공동체의 경우 국제연합의 기후변화 협약의 내용과 그 개별적 요소 하나하나에 대응하여 유럽차원에서 각 공동체의 당사국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 제반 영역에 대한 규범체계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환경산업의 지원을 위한 입법적 대응사례에 관하여는 입법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와 현재 입법이 추진 중인 경우를 나누어 그 쟁점을 검토하였다.

먼저, 기후변화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환경산업 관련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된 사례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들 입법은 기후변화에 대하여 UN협약이 요구하는 입법적, 정책적, 재정적 조치의 일부를 감당하고 있을 뿐, 전 영역을 망라하고 있지는 아니다. 국가적 입법과 정책의 모든 영역에서 기후변화를 직접 언급하고, 이를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이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입법이 추진 중인 사례로서 「기상산업진흥법(안)」, 「기상법 개정법률(안)」,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은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적 조치를 위한 행정조직과 기금의 설치에 그 내용이 집중되어 있을 뿐이며, 구체적인 정책적, 재정적 조치에 대하여는 일부의 영역에서 몇 가지 선언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에서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기상법 개정법률(안)은 기상산업진흥법의 제정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기

상산업진흥법과는 별개로 입법이 추진되는 관계로 그 일부에서 상호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위와 같은 입법 사례에서 제시된 입법적 쟁점을 기반으로 하여 법제개선의 과제를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입법적 보완계획의 수립 및 실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기후변화협약이 요구하는 과제, 특히 에너지 분야, 산업적 과정 분야, 농업분야, 폐기물 분야 등 기후변화협약이 제시하는 각 분야에 대한 개별·구체적 대응입법 목록을 발굴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끝으로 입법적 보완을 위한 내용을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한 입법적 콘텐츠와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한 신산업의 육성을 위한 입법적 콘텐츠 등을 발굴할 필요성과 그 내용을 제시한 후, 환경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행정법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적 콘텐츠를 정리하고자 할 경우 검토되어야 할 입법적 쟁점을 구체화하였다. 다만, 위와 같은 법적 장치를 제도화하고자 할 경우 행정절차법의 기본원리인 공정성과 투명성 및 신뢰성이 해당 법률의 내용, 특히 규제와 지원 장치 속에 구체적으로 담겨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점도 부가하였다.

본 연구와 더불어 장차 환경산업과 관련한 전 영역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의 정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현준, 기후보호의 법적 과제 - 주요외국의 법제 현황 및 우리의 입법방향, 한양법학 제23집 (2008. 6.), 47쪽
- 김현준, 자발적 환경협약, 환경법연구 제29권 제1호 (2007), 3쪽
- 박균성·함태성, 환경법, 박영사, 2008
- 윤순진, 기후불의와 신환경 제국주의 : 기후담론과 탄소시장의 해부를 중심으로, 환경정책 제16권 제1호(2008.5.), 135쪽
- 윤순진, 기후변화와 한국 사회의 대응 : 교토의정서 발효에 즈음하여, 환경과 생명 제43집 (2005), 151쪽
- 이재협, 교토의정서상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의 법적 문제, 환경법연구 제29권 제1호(2007), 319쪽
- 이재협, 교토의정서상 의무준수체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통상법률 제39권 (2001), 102쪽
- 한승호, 기후변화협약의 새로운 도전 : 청정개발체제의 이해와 활용, 한올아카데미 2006
- Jutta Brunnee, The United States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 Living with an Elephant, EJIL 2004 15(4), 617-649
- Kosloff, Laura H.; Trexler, Mark C.; Nelson, Hal, Outcome-Oriented Leadership: How State and Local Climate Change Strategies Can Most Effectively Contribute to Global Warming Mitigation, 14 Widener L.J. 173 (2004-2005)
- Peterson, Thomas D., Evolution of State Climate Change Policy in the United States: Lessons Learned and New Directions, 14 Widener L.J. 81 (2004-2005)
- Rabe, Barry G., North American Federalism and Climate Change Policy: American State and Canadian Provincial Policy Development, 14 Widener L.J. 121 (2004-2005)
- Andreas Troge, Neuer Aufbruch in der Umweltpolitik, Jahrbuch des Umwelt- und

Technikrechts 2006, Heft 90, 7

Christoph Enders, Die Inkorporation des Emissionshandels in das deutsche Luftreinhalteungsrecht – normativer Rahmen und aktuelle Rechtsprobleme, LKV 2007 Heft 5 193

Karsten Runge/ Thomas Schomerus, Klimaschutz in der Strategischen Umweltprüfung – am Beispiel der Windenergienutzung in der Ausschließlichen Wirtschaftszone, ZUR 2007 Heft 9, 410

Wolfgang Köck, Klimawandel und Recht – Adaption an Klimaänderungen: Auswirkungen auf den Hochwasserschutz, die Bewirtschaftung der Wasserressourcen und die Erhaltung der Artenvielfalt – ZUR 2007 Heft 9, 393

http://www.gihoo.or.kr/portal/01_General_Info/01_Change.jsp (기후변화홍보포털)

<http://www.tfcc.go.kr/>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 홈페이지)

http://unfccc.int/essential_background/convention/items/2627.php (UNFCCC 홈페이지 기후변화기본협약 문서)

<http://unfccc.int/resource/docs/convkp/conveng.pdf> (UNFCCC 홈페이지 교토의정서 문서)

<http://www.epa.gov/climatechange/> (미국 연방환경청 홈페이지)

http://ec.europa.eu/environment/climat/home_en.htm (유럽연합 기후변화 홈페이지)

<Abstract>

The Renovation of Korean Legislation on the Environmental Industry to harmonize with the UN Conventions on Climate Change

Oh, Jun-Ge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out the concrete directions and contents of the renovation of Korean legislation on the environmental industry to harmonize with the UN Conventions on Climate Change.

The meaning and the range of the “environmental industry” can b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various scientific areas and viewpoints. The objects of this article are the environmental industries which are connected with the UN Conventions on Climate Change : The Industry for the prevention or minimization of the causes of climate change or for the adoption of the climate change.

The concrete regulatory contents of the environmental industry in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nd “The Kyoto Protocol” are analyzed in this paper.

The recent changes of legislations and polices about the environmental industrie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in the European Union are reported for the comparison with the Korean legislations.

The situation of the Korean legislation is differentiated in following three categories and analyzed in this paper: Done, In Process, Not in Action.

The legislations which were already made for the harmonization of UN Conventions on Climate Change are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witchover to the Environment Friendly Industrial Structure”,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Increased Use of New and Renewable Form of Energy”,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The legislations which are now in process in the Korean government and National

Parliament are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Climate Industry(Draft)”, the “Climate Act (Revision)”, the “Framework Act on th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Climate Change(Draft)”.

The legislations which were already done or are in action is partial and restrictive. There are still remaining many areas, which are waiting for the revision of the current legislation or introducing new legislative measures.

The necessity, direction and outline of the comprehensive plan and roadmap of the legislation in Korea for the complete harmonization with the UN Conventions on Climate Change are discussed in this article.

주 제 어 기후변화, 기후변화기본협약, 교토의정서, 환경산업, 온실가스, 신·재생에너지, 기상산업

Key Words Climate Change,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Kyoto Protocol, Environmental Industry, Green-house Gases, New and Renewable Form of Energy, Climate Industry